



「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」

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(4)

| 오상훈 교수 |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



※ QR코드를 통해 "형사법의 끝판왕" 형사법 오상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출제영역 : 범죄론]

09.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㉠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,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'카메라등이용촬영죄'의 미수이다.
- ㉡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지라도,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.
- ㉢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,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,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③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(대판 2009.10.29, 2009도7150).
- ㉣ (O) 대판 2015.3.20, 2014도16920
- ㉤ (O) 대판 2021.3.25, 2021도749 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인정되므로

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,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(대판 2008.2.14, 2007도8767). ※ **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,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.**

- ㉥ (X) [살인미수사건]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,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, 甲에게는 ①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②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③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(대판 2009.10.29, 2009도7150).

㉦ (O) 대판 2015.3.20, 2014도16920

㉧ (O) 대판 2021.3.25, 2021도749 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인정되므로

[출제영역 : 범죄론]

10.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, 기도된 교사(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)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(원칙규정)으로 본다.
-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.
- ③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·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,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.
- ④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.

정답 : ① 난이도 : 상

- ① (O) 기도된 교사(제31조 제2항, 3항)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의 가벌성을 긍정하는 것이므로 **공범독립성설**에서는 이를 당연규정(원칙규정)으로 보지만, **공범종속성설**에서는 특별규정(예외규정)으로 본다.
- ② (X) **극단적 종속형식**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**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·유책한 경우**, 즉 세 가지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므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없고, 간접정범의 문제가 된다.
- ③ (X) [뺨끼주점특수절도공동정범사건]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,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

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시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(대판 1998.5.21, 98도321 전원합의체).

- ④ (X) [어? 사건]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, **공모관계에서의 이탈**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(대판 2008.4.10, 2008도1274).

[출제영역 : 범죄론]

11.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,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원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.
-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.
- ③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동생이 친족간의 특례규정(제151조 제2항)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.
- ④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,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.

정답 : ② 난이도 : 중

- ① (O) 대판 2017.6.19, 2017도4240
- ② (X) [불륜동영상 공갈교사사건]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,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(대판 2012.11.15, 2012도7407).
- ③ (O) 대판 2006.12.7, 2005도3707
- ④ (O)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(제31조 제2항),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.

정답 : ④ 난이도 : 상

- ㉠ (X) 대법원 2011.6.9. 선고 2010도10677 ⇒ 미수 X, 기수 O
- ㉡ (X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**신용카드의 사용**이라 함은 **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**